#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|
|---|---|

제안연월일 :
제 안 자 :

## 1. 제안이유

❍ 「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」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❍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유일한 제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,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,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,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경기도형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❍ 주거복지기금의 존속기한(만료일 : 2022년 6월 12일)을 연장(만료일 : 2027년 6월 12일)하여 안정적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❍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(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나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다. 비용추계서(예산정책담당관) ------- [붙임 1] 참조

라. 현행 조례 ------- [붙임 2] 참조

경기도 조례 제 호

#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4조(기금의 ~~존속~~기한)** 이 기금의 ~~존속~~기한은 2027년 6월 12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| 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2027년 6월 12일까지----. |

**관계법령 발췌서**

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[붙임 1] 비용추계서(예산정책담당관)

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

# 경기도의회사무처

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

수신 도시환경전문위원

(경유)

제목 「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대상 알림

1. 도시환경전문위원실-856(2022.03.03.)호 관련입니다.
2.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「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예산정책담당관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예산분석관 | 신혜리 | 예산분석팀장 | 최승열 | 예산정책담당관 | 전결 2022. 3. 4. 도영수 |

협조자

시행 예산정책담당관-918 (2022. 3. 4.) 접수 도시환경전문위원-881 (2022. 3. 4.)

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(매산로3가, 경기도청) (이의동) / http://www.ggc.go.kr/main

전화번호 031-8008-7307 팩스번호 031-8008-7309 / hyesh21@gg.go.kr / 대국민 공개

국민행복시대!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.

## [붙임 2] 현행 조례

#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

[시행 2021. 5. 20.] [경기도조례 제6994호, 2021. 5. 20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

1.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
2. 주택 개·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
3.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
4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
5. 주거복지센터 운영
6.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금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**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업무 담당 실·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.

1. 경기도의회 의원
2.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
3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· 보관하고,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서면심의)**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,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6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

**제12조(기금관리 및 회계관리)**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주택실장
2. 기금분임운용관 : 주택정책과장

3. 기금출납원 : 기금 담당 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「경기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3조(결산 및 보고)**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**제15조(수당 및 여비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「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7.6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경기도 주거기본 조례」(경기도조례 제5309호, 2016. 7. 19 제정)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7.11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) <제6556호, 2020.5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생략

제3조(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항 부터 ⑧항 생략

⑨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BR>제4조제3항 중 “하며, 여유자금은 「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⑩항 부터 ⑭항 생략

부칙 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) <제6994호, 2021.5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